

전라남도 고시 제2025-249호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025. 6. 26.

전라남도지사

I. 산업단지 개요

1. 관리기관 : 목포시장 (변경없음)

가. 명 칭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1189-1번지 일원

다. 면 적 : 1,545,006.8㎡

라. 사업시행자 :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 목포시장

마.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4호에 의한 개발

2. 조성목적 (변경없음)

가. 대불국가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되었고 서남부권의 산업입지 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역 내 산업용지 수요증가로 용지공급의 불균형 해소

나.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1단계 사업으로 반영되어 이와 연계한 미래 성장 동력산업과 해양관련 산업 등을 유치할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다. 지역 고용창출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

3. 조성근거법 (변경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4. 소재지 (변경없음)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1189-1번지 일원

5. 면 적 (변경없음) : 1,545,006.8㎡

6. 개발기간 (변경없음)

○ 2009. 09. 18.(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 2021. 12. 말까지

7. 추진경위 (변경)

○ '09. 02. 05. : 대양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09-43호)○ '09. 09. 18. :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09-372호)

○ '10. 11. 05. :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10-323호)
- '12. 03. 27. :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2-69호)
 - '12. 11. 27. :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2-404호)
 - '12. 12. 20. :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승인고시
(목포시 고시 제2012-215호)
 - '13. 03. 27. : 대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3-83호)
 - '14. 12. 26. :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 '15. 01. 02. : 대양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4-405호)
 - '15. 12. 31. :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5-403호)
 - '16. 01. 21. : 대양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27호)
 - '16. 12. 22. :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488호)
 - '17. 03. 16. :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7-84호)
 - '17. 04. 06. : 대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17-65호)
 - '17. 04. 27. : 대양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 공고
(목포시 공고 제2017-478호)
 - '17. 06. 08.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17-99호)
 - '17. 07. 20. : 대양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7-254호)
 - '18. 08. 30.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18-122호)
 - '18. 11. 15.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8-341호)
 - '19. 04. 04.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9-97호)
 - '19. 07. 29.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목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

- 도면 승인 고시(목포시 고시 2019-152호)
- '20. 07. 13.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목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목포시 고시 2020-193호)
- `21. 11. 22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목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승인고시(목포시고시 제2021-199호)
- `22. 03. 17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전라남도고시 제2022-128호)
- `24. 10. 10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목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승인고시(목포시고시 제2024-143호)
- `25. 05. 15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목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승인고시(목포시고시 제2025-74호)

II.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1. 관리 기본 방향 (변경없음)
 - 가. 서남권 미래 성장 동력산업과 해양 관련 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기반 구축
 - 나. 합리적인 공장배치와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 도모
 - 다. 기업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 라.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및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관리
- 2.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변경)
 - 가.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기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1,545,006.8		1,545,006.8	100.0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848,378.0		848,378.0	54.9		54.9	
지 원 시 설 용 지		92,186.8		92,186.8	6.0		6.0	
공 공 시 설 용 지		603,572.7		603,572.7	39.0		39.0	
	도 로	270,546.9		270,546.9	17.5		17.5	
	주 차 장	9,277.0		9,277.0	0.6		0.6	
	자동차정류장	91,476.9		91,476.9	5.9		5.9	
	공공청사	21,373.2		21,373.2	1.4		1.4	
	오수중계펌프장	500.0		500.0	-		-	
	공 원	51,306.7		51,306.7	3.3		3.3	
	완충녹지	19,975.3		19,975.3	1.3		1.3	
	경관녹지	139,116.7		139,116.7	9.0		9.0	
기 타 시 설 용 지		869.3		869.3	0.1		0.1	
	해수유입시설	187.4		187.4	-		-	
	제방	681.9		681.9	0.1		0.1	

나.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1,545,006.8	-	1,545,006.8	100.0	-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848,378.0	-	848,378.0	54.9	-	54.9	
지 원 시 설 용 지	92,186.8	증 6,370.4	98,557.2	6.0	증0.4	6.4	
공 공 시 설 용 지	603,572.7	감 6,440.4	597,132.3	39.0	감0.4	38.6	
도 로	270,546.9	-	270,546.9	17.5	-	17.5	
주 차 장	9,277.0	-	9,277.0	0.6	-	0.6	
자동차정류장	91,476.9	-	91,476.9	5.9	-	5.9	
공공청사	21,373.2	감6,370.4	15,002.8	1.4	감0.4	1.0	
오수중계펌프장	500.0	-	500.0	-	-	-	
공 원	51,306.7	-	51,306.7	3.3	-	3.3	
완충녹지	19,975.3	-	19,975.3	1.3	-	1.3	
경관녹지	139,116.7	감70.0	139,046.7	9.0	-	9.0	
기 타 시 설 용 지	869.3	증70.0	939.3	0.1	-	0.1	
해수유입시설	187.4	증70.0	257.4	-	-	-	
제방	681.9	-	681.9	0.1	-	0.1	

3.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입주대상 업종 (변경없음)

1) 산업시설구역

구 분	입 주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C)	식료품 제조업 (10)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전기장비 제조업 (28)
	기타기계장비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구 분	업 주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운수업 및 창고업(H)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중 도로화물 운송업 (H49(H493))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중 소화물 전문운송업 (H49(H49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네거티브업 (제한업종 이외 업종)	제한업종 C10 : 식료품 제조업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C1392 끈,로프,망 및 끈가공품제조업 제외), (C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제외 산업용지 7, 8 한정)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C19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C21 :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C233, C239) : 비금속광물제조업 중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92 연마재 제조업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내에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 포함

2) 지원시설구역

- 단지의 특성 및 주변지역과의 연관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장기 발전 방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산업단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의 업종

3) 입주제한 업종

- 생산 공정상 악취, 특정 대기·수질 등 유해물질 배출업종 및 공해 물질 과다배출로 주위환경과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
- 환경 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본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대기, 수질, 악취, 등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업종

나. 입주기업체의 자격 (변경없음)

1)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8호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 산업 및 시설로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당해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으로 지정된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입주업체가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입주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2)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기업·대학·연구소 및 제2조제19호 규정의 지원 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규정의 관리 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 기타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3) 공공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다. 입주 우선순위 (변경없음)

1) 산업시설구역

- 지방산업단지 조성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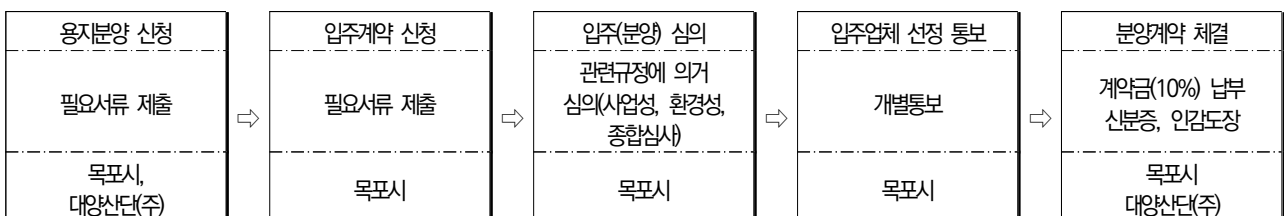
※ 관리기관은 지역산업 및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약하여 별도의 순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

2) 지원시설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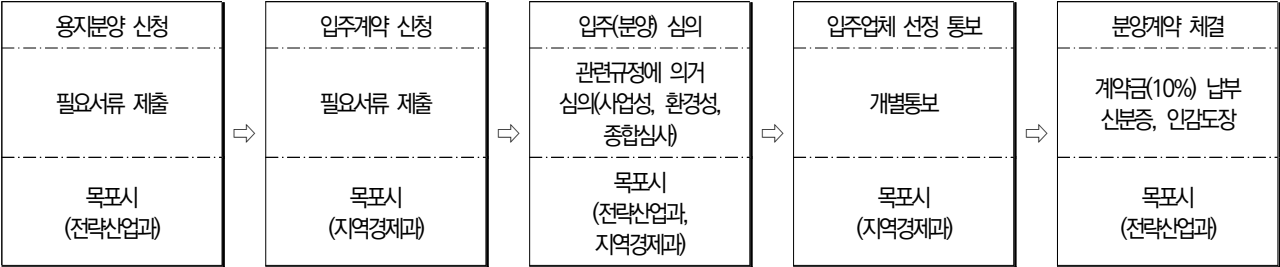
- 경쟁 입찰 낙찰가격 순위. 다만 경쟁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선착순)

라. 입주절차 (변경)

1) 입주절차 (기정)



2) 입주절차 (변경)



4. 산업단지의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용도별 구역면적 (변경)

1) 용도별 구역면적 (기정)

(단위 : ㎡, %)

총면적	산업시설 구 역	자원시설 구 역	공공시설구역		
			소계	도로 및 기타	공원 및 녹지
1,545,006.8 (100)	848,378.0 (54.9)	92,186.8 (6.0)	603,572.7 (39.1)	393,174 (25.5)	210,398.7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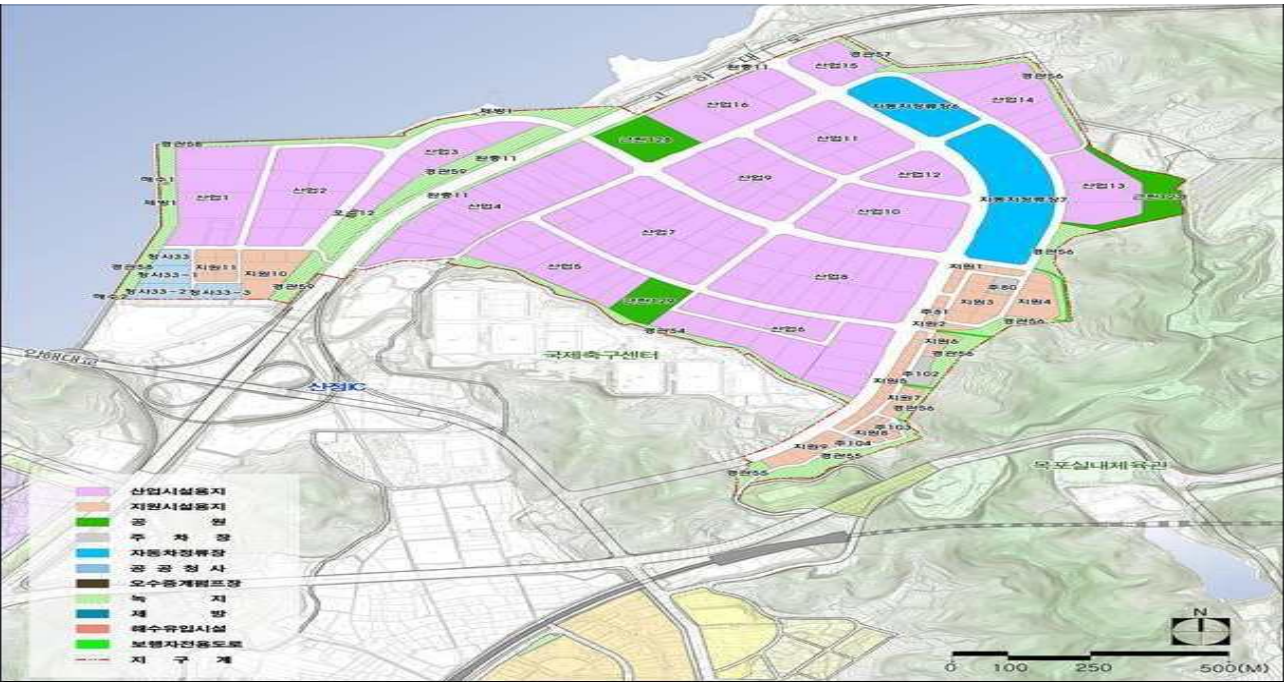
2) 용도별 구역면적 (변경)

(단위 : ㎡, %)

총면적	산업시설 구 역	자원시설 구 역	공공시설구역		
			소계	도로 및 기타	공원 및 녹지
1,545,006.8 (100)	848,378.0 (54.9)	98,557.2 (6.4)	598,071.6 (38.7)	387,742.9 (25.1)	210,328.7 (13.6)

나. 용도별 구역도 (변경없음)

○ 용도별 구역도(기정)



다.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변경)

1) 산업시설구역(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2) 지원시설구역(기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7호 판매시설, 제9호 의료시설(가.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제외한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 연구소, 제18호 창고시설,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다. 폐차장을 제외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3) 지원시설구역(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7호 판매시설, 제9호 의료시설(가.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제외한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 연구소, 제18호 창고시설,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다. 폐차장을 제외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4)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용 건축물과 관련시설 및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5.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사항 (변경)

가. 업종별 배치면적 (기정)

구분		코드	업 종	면 적 (㎡)	구성비 (%)	비고
변경 없음	-	-	소 계	848,378.0	100.0	
변경 없음	산업 1, 2, 3	C10	식료품 제조업	144,752.7	17.1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변경 없음	산업 4	C10	식료품 제조업	81,121.9	9.6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변경 없음	산업 6	C17	위생용 종이제품제조업(C17902)	76,067.8	8.9	
		C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3, C239 제외)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변경	산업 9, 10	H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H493, H494)	109,546.5	12.9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포함]			
변경	산업 11, 12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66,519.4	7.8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포함]			
변경	산업 13	C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3, C239 제외)	33,767.8	4.0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포함]			

구분		코드	업 종	면 적 (㎡)	구성비 (%)	비고
변경 없음	산업 14	C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48,332.2	5.7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변경 없음	산업15, 16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기구제외	59,878.3	7.1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변경 없음	산업 5, 7, 8	네거티브	제한업종 이외 업종 C10 : 식품 제조업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C1392 끈, 로프, 망뚝만가공품제조업 제외) (C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제외 산업7, 산업8 한정)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C19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 의약품 제외 C21 :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C233, C239)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중 시멘트, 석회, 플 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992 연마재 제조업 제외)	228,391.4	26.9	

※ 산업단지 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L6811)을 허용

나. 업종별 배치면적 (변경)

구분		코드	업 종	면 적 (㎡)	구성비 (%)	비고
변경 없음	-	-	소 계	848,378.0	100.0	
변경 없음	산업 1, 2, 3	C10	식품품 제조업	144,752.7	17.1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변경 없음	산업 4	C10	식품품 제조업	81,121.9	9.6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변경	산업 6-1	C17	위생용 종이제품제조업(C17902)	53,368.4	6.3	
		C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3, C239 제외)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변경	산업 6-2	C17	위생용 종이제품제조업(C17902)	13,829.6	1.6	
		C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3, C239 제외)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포함]			
변경	산업 6-3	C17	위생용 종이제품제조업(C17902)	8,869.8	1	
		C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3, C239 제외)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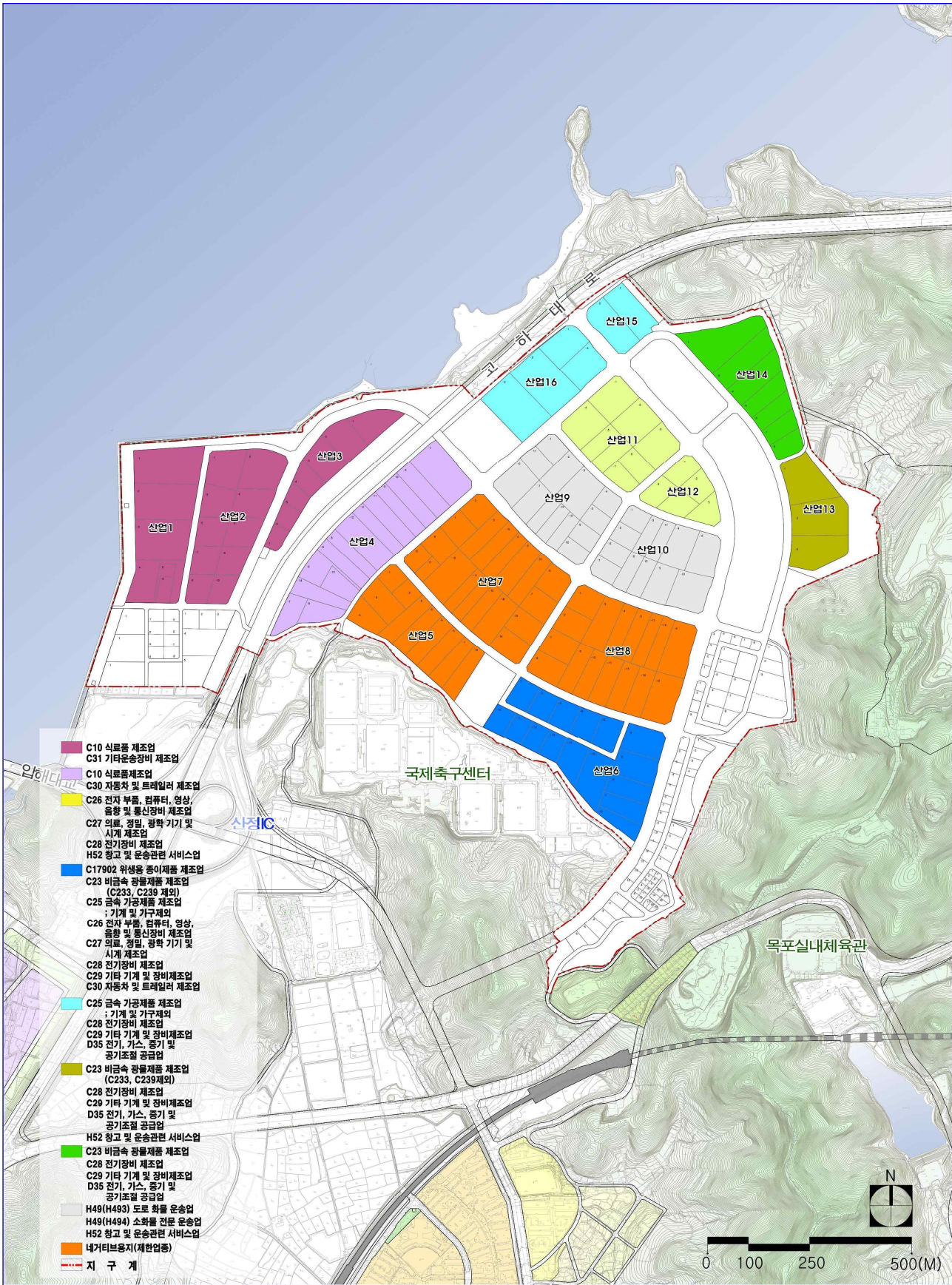
※ 산업단지 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L6811)을 허용

구분		코드	업 종	면 적 (㎡)	구성비 (%)	비고
변경없음	산업 9, 10	H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H493, H494)	109,546.5	12.9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포함]			
변경없음	산업 11, 12	C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66,519.4	7.8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전자장비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포함]			
변경없음	산업 13	C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3, C239 제외)	33,767.8	4.0	
		C28	전자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포함]			
변경없음	산업 14	C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48,332.2	5.7	
		C28	전자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변경없음	산업 15,16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기구제외	59,873.3	7.1	
		C28	전자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변경없음	산업 5,7,8	네거티브	제한업종 이외 업종 C10 : 식료품 제조업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C1392끈,로프,망및끈가공품제조업 제외) (C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제외 산업7, 산업8 한정)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C19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 의약품 제외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C233,C239)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중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조업,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992 연마재 제조업 제외)	228,391.4	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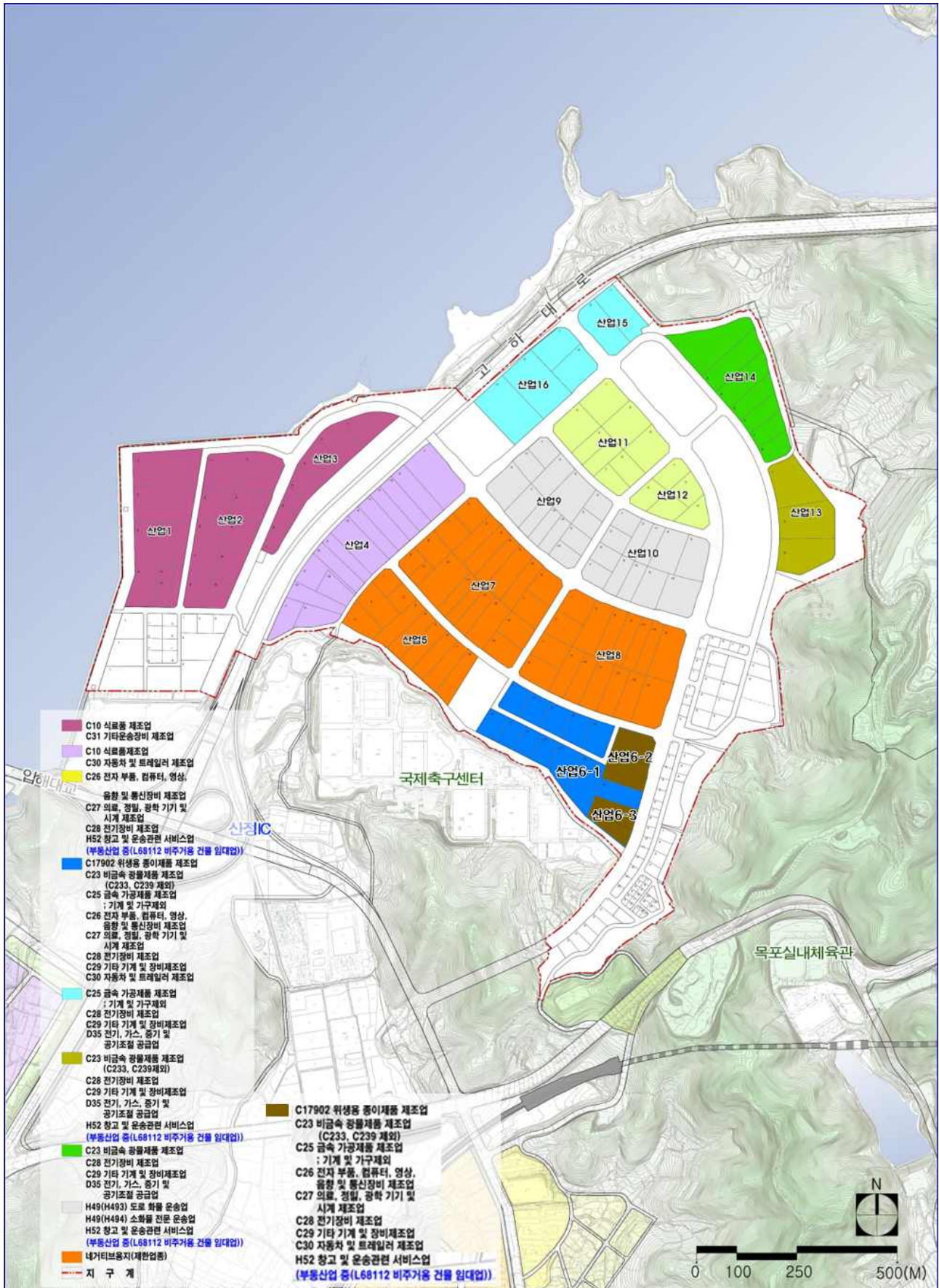
※ 산업단지 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L6811)을 허용

다. 업종별 배치계획도 (변경)

○ 업종배치계획도(기정)



○ 업종배치계획도(변경)



라. 배치기준 (변경없음)

- 주변 환경의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종별 블록화 및 블록별 관련업종 인접배치와 오염총량 관리
- 업종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 업종별 배치지역은 관리기관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음

6.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변경없음)

- 지원시설구역은 입주기업체 사업지원 및 근로자 후생복지 활동 측면을 고려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 설치 운영

나. 오·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단지 내 발생하는 오·폐수는 각 공장의 전처리 시설을 통해 1차 처리 후 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압송하여 처리

7.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변경)

가. 분양계획 (변경)

1) 분양계획표(기정)

- 분양계획표(기정)

(단위 : m²)

구분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조성 기간	사업 시행자
		분양	미분양			계		
			조성	미조성	소계			
계	1,545,006.8	982,329.4	80,362.5	-	80,362.5	1,062,691.9	실시 계획 승인일~ 2021년	목포 대양 산단 (주), 목포 시장
산업시설구역	848,378.0	794,232.3	54,145.7	-	54,145.7	848,378.0		
지원시설구역	92,186.8	90,802.7	1,384.1	-	1,384.1	92,186.8		
공공시설구역	603,572.7	97,294.4	24,832.7	-	24,832.7	122,127.1		
기타시설구역	869.3	-	-	-	-	-		

※ 공공시설구역(면적 : 603,572.7m²) 중 분양가능면적은 122,127.1m²이고, 나머지 481,445.6m²는 분양이 불가한 도로, 공원, 녹지 등의 면적임

2) 분양계획표(변경)

○ 분양계획표(변경)

(단위 : m²)

구분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조성 기간	사업 시행자
		분양	미분양			계		
			조성	미조성	소계			
계	1,545,006.8	950,315.6	118,746.7		118,746.7	1,069,062.3	실시 계획 승인일~ 2025년	목포 대양 산업 (주), 목포 시장
산업시설구역	848,378.0	772,579	75,799	-	75,799	848,378.0		
자원시설구역	98,557.2	80,442.2	18,115	-	18,115	98,557.2		
공공시설구역	597,132.3	97,294.4	24,832.7	-	24,832.7	122,127.1		
기타시설구역	939.3	-	-	-	-	-		

나. 입주계획 (변경)

1) 입주계획표(기정)

○ 입주계획표(기정)

(단위 : 개사, m²)

구 분	입주기업체 수		면 적	
	계	입주기업체	계	입주기업체
계	246	246	1,062,691.9	1,062,691.9
산업시설구역	152	152	848,378.0	848,378.0
자원시설구역	83	83	92,186.8	92,186.8
공공시설구역	11	11	122,127.1	122,127.1
기타시설구역	-	-	-	-

1) 입주계획표 (변경)

○ 입주계획표(변경)

(단위 : 개사, m²)

구 분	입주기업체 수		면 적	
	계	입주기업체	계	입주기업체
계	260	260	1,069,062.3	1,069,062.3
산업시설구역	166	166	848,378.0	848,378.0
자원시설구역	83	83	98,557.2	98,557.2
공공시설구역	11	11	122,127.1	122,127.1
기타시설구역	-	-	-	-

다. 입지여건 (변경없음)

○ 입지여건(변경없음)

시 설 명	기반시설 현황(계획)
상 수 도	- 계획 급수량 : 5,826.3㎥/일 (생활용수 507.1㎥/일, 공업용수 5,319.2㎥/일) - 용수공급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광역상수도 장흥계통을 통해 기존 대양배수지를 확장하여 공급(대양배수지(V) = 7,000㎥)
오 · 폐수처리	- 계획 오·폐수량 : 3,523.0㎥/일 (생활오수 1,301.9㎥/일, 공업폐수 2,221.1㎥/일) - 발생되는 오·폐수는 각 공장의 전처리시설을 통해 1차 처리 후 복합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압송하여 처리(V=35,000㎥/일)
폐기물처리	- 폐기물 발생 총량 : 74.08톤/일 (생활계 11.47톤/일, 사업장 57.00톤/일, 지정 5.61톤/일) - 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매립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 목표에 따라 재활용 활성화
통 신	- 통신 공급계획 : 7,141 회선 (산업시설 5,704회선, 자원시설 등 1,412회선, 공중전화 25) - 본 사업단지의 유선통신선로는 통신 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급 계획
에 너 지	- 열 수요량 : 552,171Gcal/년 - 최대(하용)부하 : 69,840kw ※ 사업지구 도시가스는 목포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도 로	-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장선상에 접해 있음 - 단지 내 도로(32개 노선, L=12,806.0m, B=4~35m, 면적=270,546.9㎡)

III. 사후관리계획

1. 목 표 (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2. 세부관리계획 (변경없음)

가. 분양용지관리 (변경없음)

- 1)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관리를 하여야 한다.
- 2)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전·후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전·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 다만,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 양도.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신고. 다만, 입주 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3)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4) 경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기간 내에 미계약 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5)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등)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은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로써 1,6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접(바로 옆 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잔여필지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산업용지 일부를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매수업체가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
- 7)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생산수출가동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업체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8)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나. 환경관리 (변경없음)

- 1) 입주업체는 환경 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본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수질, 대기,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 및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 먼지배출 시설 등 대기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특정대기유해물질(「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배출 시설이 입지할 경우 해당 공장에 고효율 저감시설(여과집진시설, 다단원심력 집진, 저녹스 버너 등 최적방지시설) 설치 운영
 - 악취배출시설 입주 시 배출허용기준의 저감시설 설치 운영
- 2) 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업종 및 유사업종을 연접하여 배치한다.
- 3)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환경영향평가 항목에 PM-25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하고, 대기오염 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건강영향평가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적절한 저감 대책을 시행한다.
- 4) 오·폐수 처리는 복합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며, 차집관로는 분류식으로 계획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오수중계펌프장은 주변사업장오수와 함께 처리를 위해 충분한 용량 계획(Q=7,000㎥/일)
- 5)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및 예측 부적정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상 악영향을 예방하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인허가 승인, 신

고 등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6) 부지정지 및 기반시설 등의 공사가 완료된 지역이나 건축공사 등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 신고사항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고 공사 시 전담요원을 적정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의 악취 저감 방안을 이행하여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7)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고효율 LED, 건축물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 시행
- 8)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제6조[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9) 산단 지구 내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등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적정처리

다. 안전관리(변경없음)

- 1) 입주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관리기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안전관리, 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음.

라. 기반시설지원(변경없음)

- 1)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IV. 관계도서열람

- 목포시 지역경제과(☎061-270-3362)에 비치하고 일반인 열람이 가능합니다.